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

수 신 회 원 사
참 조
제 목 하도급법 사각지대 건설분쟁 수·위탁분쟁조정제도 안내

1.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2.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만 적용되어, 하도급법상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※ '25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종합건설사업자 16,937개사 중 7,397개사 (43.7%)가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

3. 이에, 하도급법 적용 제외로 구제받지 못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의 수·위탁분쟁조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수·위탁분쟁조정제도 개요

○ (근거)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5에 따라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·운영

○ (대상) 수·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의 규모 요건이 없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원사업자와의 분쟁도 조정 신청 가능

-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미만이거나 수급사업자보다 연간매출액이 적은 경우의 대금 미지급·부당감액 등 분쟁

○ (효력) 수수료 없음,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 부여

○ (신청 방법) 중소기업 수·위탁거래종합포털(www.smes.go.kr/poll) [불공정거래 상담 및 분쟁조정 신고] 메뉴

○ (문의전화) 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 ☎ 1357(내선 9)
협회 불공정하도급상담센터 ☎ 02-3284-1026

붙임 1.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협조 요청 공문 1부.
2. 수위탁 분쟁조정제도 안내 리플렛 1부.
3.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 양식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
회 장 조 현 철

담당자 주임 박성민 부장 이무열 사무처장 정은숙
시 행 전건협 울산 제609호 (2026. 10. 27)
우 44726 울산 남구 삼산로 156 (달동, 전문건설회관 4층) / http://www.kosca26.or.kr
전화 052-256-8900 전송 052-256-8904 / 전자우편 acemy72@kosca.or.kr